

『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 ‘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’는 규정에 따라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 일부 조례를 보완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현행 : 「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
 - 개정 : 「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8조)
 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○ 상위 법령 관련 상세조항 추가 및 삭제

- 현행 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주차장법」,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- 개정 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49조,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

○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조문 정비

- 현행 :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제2항
- 개정 :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제3항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, 「주차장법」,
「도로교통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 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